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844
-----------	-----

2019년 9월 2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9년 9월 2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1. 제안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으로 학원 교습과정에 신설된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애견 훈련’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학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370호, 2018.12.18. 일부개정, 시행 2019.12.19.) : 제 3조의3제1항 및 별표2(학원의 교습과정)

2. 주요내용

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에 신설된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과정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신설된 ‘애견 훈련’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규정 (안 별표 3 및 별표 4)

1)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에 신설된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기존의 가장 유사한 교습과정인 평생교육직업교육학원의‘컴퓨터’과정과 동일하게 규정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 별표4와 같음

[별표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41. 전자상거래,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u>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u>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신설된 ‘애견 훈련’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기존의 가장 유사한 교습과정인 ‘애견 미용’과정의 시설기준(실습실 70㎡ 이상)에 추가로 교습과정상 필요한 최소한의 교구(10종 이상)만을 추가로 구비하도록 규정

- ‘애견 훈련’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 별표4와 같음

[별표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36. 애견 미용· <u>훈련</u>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u>애견 미용</u> 가) <u>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u> 나) <u>욕조 2대 이상</u> 다) <u>드라이어 10대 이상</u> 2) <u>애견 훈련</u> <u>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u>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나.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식음료품’교습과정의 예시 추가사항 등을 학원 시설 및 설비·교구 기준에 추가 (안 별표 3 및 별표 4)

- 1)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 중 ‘식음료품’ 과정의 예시에 추가된 ‘조리, 제과·제빵’과, 교습분야 및 교습계열 중 ‘인문사회’에 추가된 ‘자연’을 각각 ‘(별표3) 학원의 시설규모’기준과 ‘(별표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추가해 상위법령과 일관되게 규정함
- 평생직업교육학원 ‘식음료품’ 교습과정의 예시(별표3, 별표4)
 - 바리스타, 소몰리에 등 →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몰리에 등
 -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분야 및 교습계열 ‘인문사회’(별표3)
 - 인문사회 → 인문사회·자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844호로 제출되어 2019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학원의 교습과정과 시

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지난 2018년 12월 18일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은 학원에 대한 학습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원법 시행령」은 동 개정을 통해 별표 2 중 ‘학원의 교습과정’에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애견 훈련’ 과정과 ‘식음료품’ 교습과정의 예시에 ‘조리, 제과·제빵’ 과정을 각각 신설·추가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분야 및 교습계열 중 ‘인문사회’에 ‘자연’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¹⁾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학원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8조(시설기준)의 규정에 따라²⁾ 신설·추가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1) 학원의 교습과정(학원법 시행령 [별표2] 발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습교과교습학원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인문사회· 자연	인문사회· 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시설기준)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교습과정과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에 대한 의견(안 별표 3, 안 별표 4)

○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동 조례 제5조제1항은 “「학원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동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³⁾

○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이하 “정보교과”)’ 교습과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별표 3에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개정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학원의 시설 규모 [안 별표 3]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교습학원	정보	정보	<u>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u>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정보교과 교습과정 신설에 따라 정보교과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기존 교습과정 중 가장 유사한 ‘컴퓨터’

3)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제3조(학원시설)제3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이나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보건실, 휴게실 및 체육장(체육시설)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의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교구와 설비

- [별표 3] [별표 4]는 관계법령 참조

계열의 교습과정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교과 교습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안 별표 4]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41. 전자상거래,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먼저 정보교과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고 교과목이 새롭게 개편 또는 신설된 것으로⁴⁾

지식·정보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보윤리의식, 정보보호능력, 정보기술활용능력 등 정보문화소양을 갖추며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 및 네트워크 컴퓨팅 기반 환경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교과입니다.

○ 이런 점에서 정보교과의 교습과정은 기존의 전자상거래,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교습과정과 유사 또는 포괄하는 교습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 ‘정보’ 과목의 내용체계(영역)가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추상화와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 실무 위주의 컴퓨터 계열 교습과정과 달리 정보문화소양, 창의적 컴퓨팅 사고력, 공동체에서의 협력적 문제해결력 등을 기르기 위

4) 초등학교 : 교과(실과) 내용을 SW기초소양교육으로 개편 / 중학교 : 정보교과 신설 / 고등학교 : ‘정보’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

한 교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서도 ‘컴퓨터’ 교습과정과 ‘정보교과’ 교습과정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별표 4에 별도로 ‘정보교과’ 교습과정을 명시하여 명확히 구분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표3】 ‘정보’ 과목의 내용체계(영역)⁵⁾

내용체계(영역)	주요내용
정보문화	정보사회의 특성과 진로, 개인정보와 저작권 보호, 사이버 윤리
자료와 정보	자료의 유형과 디지털 표현, 자료의 수집, 정보의 구조화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추상화(문제 이해, 핵심요소 추출), 알고리즘의 이해 및 표현, 프로그래밍(입력과 출력, 변수와 연산, 제어구조, 프로그래밍 응용)
컴퓨터시스템	컴퓨팅 기기의 구성과 동작 원리, 피지컬 컴퓨팅(센서 기반 프로그램 구현)

○ 이와 함께 정보교과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은 정보교과와 가장 유사한 교습과정인 컴퓨터 계열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학원법」 제8조의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규정과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의제1항 및 제2항의 교습과정의 분류 및 등록 규정에 따라 정보교과와 가장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⁶⁾

5) 서울시교육청 고시 제2017-5호(2017.3.13.)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정보)」
서울시교육청 고시 제2017-5호(2017.3.13.)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정보)」

6)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시설기준)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애견 미용·훈련’ 교습과정과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에 대한 의견(안 별표 3, 안 별표 4)

- 동 개정조례안은 ‘애견미용’ 교습과정에 ‘훈련’을 추가하여 ‘애견 미용·훈련’ 교습과정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애견훈련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 먼저, 안 별표 3의 ‘애견 미용·훈련’ 교습과정은 기존 ‘애견 미용’ 교습과정에 ‘훈련’을 추가하여 명칭을 개정한 것으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개정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4】 학원의 시설 규모 [안 별표 3]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향송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표5】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안 별표 4]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36. 애견 미용· <u>훈련</u>	가. 시설 실습실 7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가)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나) 욕조 2대 이상 다) 드라이어 10대 이상 2) <u>애견 훈련</u> <u>교습과정에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u>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애견 훈련’ 과정의 시설기준을 기존의 교습과정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중 가장 유사한 ‘애견 미용’ 과정의 시설기준(실습실 70㎡)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기준을 새롭게 추가하여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애견 훈련’ 교습과정은 애견과 사람이 함께 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를 교육시키는 것으로 애견 훈련의 목적에 따라 익혀야 하는 훈련 기술이 다르며 견종마다 그리고 개의 성향에 따라 훈련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할 것이며,

‘애견 훈련’의 목적, 기술, 방법, 견종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시설·교구⁷⁾ 또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특정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애견 훈련’과 유사한 교습과정인 ‘애견 미용’의 시설면적을 갖추도록 한 것과 교습과정에 필요한 교구를 10종 이상으로⁸⁾ 하여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구를 구비토록 한 것은 학원설립·운영자들의 부담 완화 및 학원 운영의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6】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실습실 등 면적 기준

구분	교습과정
990㎡	농림(임업, 원예)

- 7) 애견 훈련 교구 : 목줄, 리드줄, 체인, 초크체인과 홀치기 줄, 몸줄, 안면줄, 먹이 장난감, 클릭커, 소변패드, 경계 훈련을 위한 ‘침대’, 동작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목줄’, 불안감 진정시키는 ‘셔츠’, 사고 예방을 위한 ‘허리 랩’, 탈취제, 간식(개들이 집중하고 수행하도록 동기 부여를 해 줄 유혹적인 향과 맛이 좋은 훈련용 간식), 배변 봉투, remote Trainers, 방수된 ‘가지귀와 배꼽 패드’, ‘제어 기능’ pet Convincer II, 헤드칼라 ‘HALTI’ 등등
-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학원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10명으로 하고 있으며, 동 조례 별표 4의 마술 교습과정은 교구를 특정하기 어려워 ‘마술교구 10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61. 마술(매직)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마술 교구 10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90m ²	농림(동물 사육)
350m ²	중기운전
225m ²	방송
180m ²	조선
150m ²	자동차(정비, 중기)
105~120m ²	전기(재료,기기,공사), 항공, 해양, 안전관리, 영화, 모델, 간호조무사, 독서실
90m ²	기계, 귀금속 가공, 화공 및 세라믹, 통신, 전자, 토목, 건축, 광업자원, 농림(동물 박제·모피피혁), 에너지, 환경,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항공승무원, 영상, 음반, 연기
80m ²	음악, 국악, 실용음악(성악), 미술
75m ²	무용, 댄스
70m²	국토개발(저경, 도시계획, 지적), 공예, 교통,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속기, 전산회계,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 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애견미용 , 장의, 호스피스,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전자상거래, 컴퓨터, 게임, 로봇, 출판, 캐릭터, 관광, 펜글씨, 주산, 서예, 도예, 만화, 화술, 응변, 바둑

○ 참고로 교육부는 신설된 ‘애견 훈련’ 교습과정도 종전의 애견미용학원에서 시설면적을 추가로 갖출 필요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애견 훈련’을 별도의 교습과정으로 규정해 시설면적을 추가로 갖추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⁹⁾

라. 그 밖에 사항에 대한 의견(안 별표 3, 안 별표 4)

○ 그 밖에 안 별표 3과 별표 4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식음료품’ 과정의 예시에 ‘조리, 제과·제빵’ 과정을 추가하고, 교습분야 및 교습계열 중 ‘인문사회’에 ‘자연’을¹⁰⁾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19.12.19.)에 따른 시·도 조례 개정 안내(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133, 2019.5.2.)

10) 가. 인문사회 계열 : 인문과학, 사회과학을 필두로 하여 인간 사회의 문화와 사회 질서 및 역사와 그 문화에 따른 언어학을 탐구 및 연구하는 교육과정을 의미 함.

나. 자연계열 : 과학(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수학 등의 자연 질서와 논리학에 대하여 탐구 및 연구하는 교육과정을 의미 함. [출처 : 위키백과]

이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학원의 교습과정’ 개정 사항의 명칭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원법 시행령				조례 개정안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별표 3] 학원의 시설규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응용 기술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응용 기술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인문사회 ·자연	인문사회 ·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인문사회 ·자연	인문사회 ·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별표 4] 시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23. 식음료품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 타, 소믈리에 등)		현행과 같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학원의 시설규모

(제5조제1항 관련)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 시	660㎡ 이상	
			검정고시	90㎡ 이상	
			보습·논술	7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 · 지도	70㎡ 이상	
	국제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 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150㎡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정 보	정 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4와 같음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70㎡ 이상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70㎡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4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70㎡ 이상	
	국 제 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150㎡ 이상	
			통역, 번역	70㎡ 이상	
	인문사회· 자연	인문사회·자연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옹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에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 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 비 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은 보통 교과목(정보교과, 예·체능계, 실용 외국어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의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					

[별표 4]

실험 · 실습 ·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 설비 및 교구

(제5조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	비고
1. 기계 (기계공작, 기계정비, 기계설계, 기계제도)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일반, 건설, 기계설계 과정 가) CAD설계용 개인용 PC 10대 이상 (1인 1대) 나) CAD설계용 프로그램 10copy 이상 다) CAD도면 시연슬라이드 스크린 1대 이상 라) CAD도면 시연프로젝터 1대 이상 2)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과정 가) 자동화프로그램용 개인PC 5대 이상 나) PLC실습용 판넬 3대 이상 다) PLC구동 콤프레셔 1대 이상 라) 자동화 제어용 기기 1대 이상 3) 공조냉동, 용접 과정 가) CO ₂ 용접기 2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 2대 이상 다) Ar용접기 1대 이상 라) 용접용 토치, 가스게이지, 그라인더 각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1. 중기운전>	가. 시설 1) 운전실습장 350㎡ 이상 2)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 가동완제품 2종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2. 자동차정비, 중기>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정비실습실 9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자동차 3대 이상 2) 가솔린기관 3대 이상 3) 디젤기관 1대 이상 4) 변속기 2대 이상 5) 차동기 2대 이상 6) 차량용 리프트 1대 이상 7) 엔진 중합테스터기 1대 8) 휠바란스 1대 9) 휠얼라이언먼트 1대 10) 밧데리 테스터기 1대 11) 배기가스 테스터기 1대(CO,HC 검용) 12) 디젤매연테스터기 1대 13) 헤드라이트 시험기 1대 14) 타이어 탈착기 1대 15) 에어컨 가스주입기 1대 16) 중기의 경우 해당 중기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3. 금속 (귀금속 가공)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나. 설비 및 교구 1) 산소용접기 2대 이상 2) 파모기 1대 이상 3) 광택기 1대 이상 4) 모루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 5) 압연기(전기로러)1대 이상 6)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화공 및 세라믹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위험물 분야 과정 가) 위험물 동영상교육용 컴퓨터 5대 이상 나) 위험물 동영상 슬라이드용 스크린 1대 다) 위험물 동영상 교육용 프로젝터 1대 이상 2) 화공, 화학, 세라믹 과정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등기기 5종 이상 3) 화약류제조 과정 화약류의 제조, 분석, 시험에 필요한 기기5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전기 (전기재료, 전기기기, 전기공사)	가. 시설 1) 실습실 90㎡ 이상 2) 전기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동기 특성 실험장치 5set 2) 수전, 송전, 배전실 가) 특고압용 변압기 150KVA이상 3대 나) 특고압용 인터럽터 스위치 1대 다) COS 6대 라) 특고압용 3상 전력용 콘덴서 10KVA 이상 1대 마) 22.9KV용 피뢰기 3대 바) 22.9KV MOF 1set 사) 큐비클 5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역률계,절연저항계,전압계,전류계, 주파수계, 전력계(0.2rmq)각10대 이상 4) 실험·실습대(4-6인용) 5대 이상 5) 전기공사 실습 작업판(1200X1800m) 10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통신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정보통신 운용과정 가) 파일 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이상) 1대 이상 나) 하드디스크 20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 다) 프린터 2대 이상 라) 허브(20port이상)1개 이상 2) 정보통신설비과정 가) 모뎀(Modem) 10대 이상 나)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다)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라) 오실로스코프(20MHz 이상) 5대 이상 마) 주파수발진기(100MHz 이상) 5대 이상 바) 주파수카운터(100MHz 이상) 5대 이상 사) 전계강도측정기 5대 이상 아) 신호감쇠기 5대 이상	
6. 통신	자) 직류전원 공급기(30V, 3A이상) 5대 이상 차) 비트패턴발생기 2대 이상 카) 프로토콜 아날라이저 2대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타) 정보통신 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3) 무선설비과정 가)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나) 오실로스코프(20MHz이상) 5대 이상 다) 주파수발진기(2MHz 이상) 5대 이상 라) 주파수카운터(100MHz 이상) 5대 이상 마) 전계강도측정기 5대 이상 바) 신호감쇠기 5대 이상 사) 직류전원 공급기(30V,3A 이상) 5대 이상 아) 스펙트럼 분석기(1GHz 이상) 1대 이상 자) 벡터스코프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전자	가. 시설 실습실 9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나) 신호발진기(2MHz 이상) 5대 이상 다) 오실로스코프(20MHz 이상) 5대 이상 라) 직류전원 공급기(30V,3A이상) 5대 이상 마) 트랜지스터수신기 10대 이상 바) 녹음기 10대 이상 사)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10조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전파전자과정 (1) “나”목 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2) 텔레비전, 패턴발생기(NTSC방식) 1대 이상 (3) 텔레비전 전계강도 측정기 1대 이상 (4) 벡터스코프 1대 이상 (5) 고전압계 1대 이상 (6) TV 10대 이상 나) 전자기기과정 (1) “나”목 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다) 컴퓨터기기과정 (1) “나”목 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2) 프린터 2대 이상 (3)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4) 컴퓨터(PC)기기 10대 이상 라) 영상재생장치과정 (1) “나”목 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2)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3) 영상재생장치 10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선	가. 시설 1) 실습실 90m ² 이상 2) 설계실 9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이상 2) 일반 공구 20set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항공	가. 시설 실습실 12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항공기정비 및 항공기조립 과정	
9. 항공	가) 비행기(4인승이상) 1대 이상 나) 헬리콥터(3인승이상) 1대 이상 다) 항공기용 공랭식 왕복엔진 (1) 수평대향형 4기통 및 6기통 각 1대 이상 (2) 수직 대향형 1대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3) 성형 1대 이상 라) 항공기용 제트 엔진 (1) 터보-팬 1대 이상 (2) 터보-제트 1대 이상 (3) 터보-샤프트 또는 터보-프롭 1대 이상 마) 리벳건, 드릴링머신 20set 이상 바) 유압, 랜딩기어 등 각 계통 Mock-up 5종 이상 사) 수공구(30종) 20set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토목, 건축	가. 시설 설계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의복, 섬유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자수재봉기 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대 2)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 양재·한복 과정 가) 미싱 5대 이상 나) 마네킹 3개 이상 다) 오버로크 재봉틀 1대 이상 4) 섬유과정 가) 방사 및 방적기계 설비 2종 이상 나) 정련표백, 염색가공 실습설비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 광업자원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화약류관리 과정 화약 및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진동측정기, 주철 전류 측정기, 모의발파기기 등 3종 이상의 실습교구 2)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과정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실습에 사용되는 채광, 탐사, 선광실무용 실습기기 3종 이상 다. 그 밖의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3. 국토개발 (조경, 도시계획, 지적)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도면설계용 제도작업대 10개 이상 2) 삼각자, T자 각각 10개 이상 다. 그 밖의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 농림 <14-1. 동물>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300㎡ 이상	
14. 농림 <14-1. 동물>	나) 동물 5종 이상 다) 오·폐수 처리장치 1조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각 5점 이상 나) 박제제작 셋트 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set 3) 모피피혁과정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가) 화학약품처리장 : 15㎡ 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 탱크전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 농림 <14-2. 임업, 원예>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실습지 900㎡ 이상 다. 그 밖의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5. 해양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실습선박(30G/T이상) 1척 이상 나) 환등기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갑판과 (1) 정박계선기구(양카 2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2)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m 각 1개 이상 (3)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4)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5) 수리용 공구 1식 이상 나) 기관과 (1) 디젤기관(30마력 이상) 1대 이상 (2)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3)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4) 펌프류(원심력, 기아식) 각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6. 에너지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3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7. 환경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수질과정 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기 2대 이상 나) 수질 및 대기환경 분야 실험기기 10대 이상 2) 자연환경과정 가) 생태복원 설계 제도기기 10대 이상(1인 1대 기준) 나) 생물분류, 토양환경과정 실습에 필요한 기기 2대 이상 3)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소음진동측정, 폐기물처리 실무에 필요한 기기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8. 공예 (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에 등)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공작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9. 교통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통량조사 장비류 2세트 이상 2) 사고분석 및 재현용 기자재류(컴퓨터 및 재현프로그램) 2세트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0. 안전관리	가. 시설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1) 실습실 90㎡ 이상 2) 강의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가스과정 가)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나) 오스타기 10대 이상 다) 파이프렌치, 퐁키, 스페너 등 10대 이상 라) 파이프커터기 2대 이상 마) 밴딩머신 1대 이상 바) 바이스 10대 이상 사) 배관 및 용접용 작업대(880X550m/m, 2인용) 5대 이상 아) 가스, 전기용접기 각 2대 이상 2)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 소방설비, 인간 공학과정 가) 동영상 슬라이드용 스크린 1대 나) 동영상 교육용 프로젝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 디자인 <21-1. 산업디자인>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제도판 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대 나) 실습대(1인용)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 3) 섬유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다) 복사 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쇼윈도우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 다) 쇼 윈도우용 마네킹 5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 디자인 <21-2. 패션디자인>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제도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2)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3) 모타 미싱 10대 이상 4) 패턴 실습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4인당 1대 5) 인대(마네킹) 5대 이상 6) 컴퓨터 2대 이상(CAD)수업시 2인당 1대 7) 컴퓨터 미싱 3대 이상 8) 오바로크 2대 이상 9) 아이롱 3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2. 이·미용 <22-1. 이용>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이발의자 10개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3) 건발기 2대 이상 4) 이발기구, 면도, 가위 각 10개 이상 5) 대형거울 : 이발 의자수에 상응하는 개수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22. 이·미용 <22-2. 미용>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헤어과정 가) 인두(마네킹) 20개 이상 나) 건발기(드라이) 10조 이상 다) 파마기 20종 라) 미안대(거울) 10조 이상 마) 샴푸대 2대 바) 세면장 및 급수시설 사) 실습대(4인용) 6대 이상 아) 컷트기구 10개 자) 셋팅기구 10개 2) 피부 미용 과정 가) 맞사지 침대 10개 나) 미안대(거울) 10조 이상 다)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그 밖의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 식음료품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 가) 조리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4인당 1대 이상 나) 냉장고(1,000L이상) 1대 이상 다) 오븐기 1대 이상 라)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마) 제독시설 2) 제과·제빵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다)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라) 실습대 8대 이상 마)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바) 저울(5Kg 이상) 10대 이상 사)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1대 이상 아) 반죽로라(DOUGH SHERTER) 1대 자) 냉장고(1,000L) 1대 이상 차)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3) 조주, 소믈리에 가) 진열대 4대 이상 나) 조주대 4대 이상 다) 양주병 : 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4) 바리스타 가) 커피머신 1대 이상 나) 커피그라인더 1대 이상 다) 로스터(로스팅머신)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4. 포장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5. 인쇄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2종 이상 2) 제판장비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 사진	가. 시설 1) 실습실 70㎡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2) 암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4종 이상(1,000만 화소 이상 디지털카메라 포함) 2) 확대기 2대 이상 3) 필름스캐너 1대 이상 4) 디지털프린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7. 피아노조율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 작업대 2대 이상 2) 조율 튜너, 튜링 햄머 각 3대 이상 3) 스테이시, 스프운밴다, 건반 교르기 자, 다이얼 게이지 각 2대 이상 4) 피아노 3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 속기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대)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 전산회계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3)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0.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 기획, 소비자전문상담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1. 텔레마케팅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화단말기 1대 이상 2) 헤드셋 10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2. 카지노딜러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게임용 테이블(바카라, 블랙잭, 룰렛, 다이사이, 포카) 각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3. 도배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주걱 1인당 1개 이상 2) 도배용 솔 1인당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4. 미장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수평대(레이저 수평계) 3개 이상 2) 미장용 흠손 1인당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35. 세탁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드라이크리닝기계 1대 이상 2) 회수건조기 1대 이상 3) 물세탁기 1대 이상 4) 스팀아이롱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6. 애견 미용·훈련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가)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나) 욕조 2대 이상 다) 드라이어 10대 이상 2) 애견 훈련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7. 장의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연습대 10대 이상 2) 수의(남, 여 구분)10세트 3) 관 2대 이상 4) 실습용마네킹 5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8. 호스피스, 병원 코디네이터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9. 항공승무원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기내모형: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 이상 설치 2) 거울을 갖춘 화장대 10조 이상 3) 걸음걸이 연습에 필요한 워킹대(마루판 등)설치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0. 청소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스팀청소기 1대 이상 2) 마루광택기 1대 이상 3) 고압세척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1. 전자상거래, 컴퓨터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정보교과 에 속하는 교육활동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2. 출판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컴퓨터 5대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3. 영상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6mm 디지털 VTR 5대 이상 2) VHS용 VTR 5대 이상 3) 베타캠 VTR 2대 이상 4) 비디오 카메라 또는 캠코더 10종 이상 5) TV 모니터 10대 이상 6) 조명기구 10종 이상 7) 간이 편집 자막기 3종 이상 8) 오디오 더빙용 오디오 set 5종 이상 9) 논리니어 편집기 3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4. 음반(음반제작)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가) 녹음 조정실 30㎡ 나) 녹음 스튜디오 30㎡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믹서(32채널 이상) 1대 2) Adat card 1대 이상 3) 앰프 1대 이상 4) 마이크 프리앰프 1대 5) 오디오 컨버터 1대 6) 음향 이펙터 1대 7) 마이크로 폰(녹음용) 1대 8) 모니터 앰프 1대 9) 녹음프로그램 1개 이상 10) 컴퓨터 1대 이상 11) 컴퓨터용 오디오 컨버터 1대 12) Adat & HD Record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5. 영화, 모델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화기술과정 가) 현상실 10㎡ 이상 나) 녹음실 15㎡ 이상 다)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2) 모델과정 무대장치, 조명장치 각 1조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6. 방송	가. 공통 시설 강의실 30㎡ 이상 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상스위치(VIDEO SWITCHER UNIT 12CH 이상) 1대 (2) 영상효과기(S.E.G 12CH 이상) 1대 (3)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2CH 이상) 1대 (4) 영상2:1편집기(VIDIO EDIT 2:1EDITOR) 1대 (5) 동기신호발생기(SYNGENERATOR) 1대 (6) 디지털플레이(DV25급 PLAY DECK) 1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46. 방송	<p>(7) 디지털녹화기(DV25급 REC DECK) 1대 (8) 베타플레이어(BETACAM PLAYERDECK) 1대 (9) 베타레코더(BETACAM REC DECK) 1대 (10) 문자발생기(COMPUTER GRAPHICS) 1대 (11) 논리니어편집기(NON LINER EDIT) 3대 (12) 파형계측기(WAVEFORM MONITOR) 1대 (13) 위상계측기(VECTOR SCOPE) 1대 (14) 사운드 재생기(CD PLAYER) 1대 (15) MIONOTOR 10대 이상</p> <p>2) 스튜디오 가)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타캠 고품질 카메라(BETACAMCAMERA) 2대 이상 (2) EFP용 카메라(CCU 포함) 2대 이상 (3) DV25급 CAMERA 2대 이상 (4) 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 (5) 영상 오디오모니터 2대 이상</p> <p>3) 방송실습제작실 가) 편집실 (1) 기재실 30㎡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LE(liner edit)edit 1:1편집기 2set이상(플레이레코드) (나) S-VHS 또는 DV25급 DECK (다) 논리니어 편집기 2대 이상 (라) 영상스위처(VEDIO SWITCHER UNIT 12CH 이상) 1대 (마) 영상효과기(S.E.G 6CH 이상) 1대 (바)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2CH 이상) 1대 (사) 색 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아) 디지털 플레이(DV25급 PLAY DECK) 1대 (자) 디지털 녹화기(DV25급 REC DECK) 1대 (차) 모니터 6대 이상</p> <p>나) 녹음실 (1) 기재실 60㎡ 이상 (가) 녹음조정실 30㎡ 이상 (나) 녹음 스튜디오 30㎡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8CH 이상) 1대 (나) 방송용 녹음기(REEL DECK) 1대 이상 (다)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라)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마)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 1대 이상 (바)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사) 방송용 스피커 시스템(SPEAKER) 2대 이상 (아) 영상음반기(COMPUTER DISK ELECTRIC GRAPHIC) 1대 (자) MULTI TRACK RECORDER 1대 (차) CASSETTE DECK 1대 (카) CD DECK 1대 (타)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p> <p>다) 야외녹화장비 (1)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EFP CAMERA) 3대 이상 (2)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슈피터 LIGHT) 5대 이상 (3) 방송용 휴대용 조명기(SUNGUN) 1대 이상</p> <p>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종합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p>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46. 방송	<p>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 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p> <p>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2) 방송 제작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 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3) 방송기술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 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4) 아나운싱·리포터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 중 3)의 가)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과정</p> <p>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p> <p>나) 실습실 90㎡ 이상</p> <p>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6) 편집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 1) 및 3)의 가)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7) 촬영·영상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 1), 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8) 조명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 1), 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9) 음향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 1), 2) 및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10) 성우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p> <p>가) 시설</p> <p>(1) “가”목의 공통 시설</p> <p>(2) 기재실 6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 3대 이상</p> <p>(2)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각 3대 이상</p> <p>(3)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 1대 이상</p> <p>(4) 복호기(DECORDER) 1대 이상</p> <p>(5) 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p> <p>(6) 음향분배기(AUDIOO DIVIDER AMP) 1대</p> <p>(7) 칼라화면발생기(COLOR PATTERNGENERATOR) 1대</p> <p>(8)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p> <p>(9) 레벨미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p> <p>(10) 채널혼합기 1대</p> <p>(11) 채널변환기(8CH이상) 1대</p> <p>(12)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p>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13) 파형계측기(WAVEFORM MONITOR)1대 (14) 위상계측기(VECTOR SCOPE) 1대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7. 캐릭터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캐릭터 제작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3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8. 관광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관광도서 10종 이상 2) 한국지도(1/500,000), 세계지도 3) 실습실 당 고적, 명승지 안내도 각 1매 이상 4) 실습실 당 시청각기구 및 카메라 각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9. 간호조무사	가. 시설 1) 강의실 60㎡ 이상 2)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패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20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각 1개 이상 8) 침대 2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개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2) 인공배뇨셀 13) 기관절개관(Cannula Kit)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0. 펜글씨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책·결상 또는 실습용 탁자 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조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1. 주산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주판 1개 이상 2) 속도측정 초시계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2. 음악, 국악, 실용음악(성악)	가. 시설 실습실 8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악기과정 가) 주요 실습용 악기 10대 이상 나) 그 밖의 교습과목 악기 각 5대 이상 2) 실용음악 과정 가) 피아노, 기타, 드럼, 베이스 등 악기 5대 이상 나) 그 밖의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설비 3) 성악과정 가) 현대성악 : 악기 1대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나) 고전성악 : 악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3. 미술	가. 시설 실습실 8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또는 실습용 탁자 일시수용능력 인원 1인당 1개 이상 2) 과정별 기준 소묘, 수채화(서양화), 한국화(동양화), 디자인, 만화, 포트폴리오, 조소과정, 석고, 정물대, 모포 등 교습과정별로 필요한 교구 5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4. 무용 (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가. 시설 1) 무용실 7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3) 바(bar) (현대무용) 4) 북 또는 장고 등 악기 1개 이상 (전통무용)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5. 댄스	가. 시설 1) 실습실 7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6. 연기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연기과정 가) 무대장치 나) 음향기기 다) 조명장치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7. 서예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지필묵 10개 이상 2) 서법도서 1권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8. 도예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실습용 작업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조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9. 만화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라이트박스 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조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0. 화술, 웅변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나. 설비 및 교구 1) 마이크 1대 이상 2) 연단 및 녹음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1. 마술(매직)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마술 교구 10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2. 바둑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바둑알 포함) 10조 이상 2) 대형 바둑판 1개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3. 독서실	가. 시설 열람실 12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열람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대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 학원의 시설규모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학원의 시설규모 (제5조제1항 관련)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학교교과교육원	입시·검정및보습	보통교과	입 시	660㎡ 이상		입시·검정및보습	보통교과	보통교과	입 시	660㎡ 이상		
			검정고시	90㎡ 이상					검정고시	90㎡ 이상		
		진학지도	보습·논술	70㎡ 이상		보습·논술	7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70㎡ 이상	
			진학상담·지도	70㎡ 이상		70㎡ 이상						
	국제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150㎡ 이상		국제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150㎡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4와 같음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4와 같음			
	독서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독서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특수교육기타	특수교육기타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그 밖의 교습과정	70㎡ 이상		특수교육기타	특수교육기타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그 밖의 교습과정	70㎡ 이상				
평생직업교육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정	별표4와 같음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정	별표4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매,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70㎡ 이상									
	국제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150㎡ 이상		국제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15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통역, 번역	70㎡ 이상		인문사회·자연	인문사회·자연	통역, 번역	70㎡ 이상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기 예	기 예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기 예	기 예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미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용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에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4와 같음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미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용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에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4와 같음				
		독서실	독 서	학교교과교육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독서실	독 서	학교교과교육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 비 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은 보통 교과목(예·체능계, 실용 외국어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의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						* 비 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은 보통 교과목(정보교과, 예·체능계, 실용 외국어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의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						

현 행

[별표 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5조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23. 식음료품 (<u>바리스타, 소믈리에</u> 등)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 가) 조리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4인당 1대 이상 나) 냉장고(1,000L이상) 1대 이상 다) 오븐기 1대 이상 라)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마) 제독시설 2) 제과·제빵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다)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라) 실습대 8대 이상 마)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바) 저울(5Kg 이상) 10대 이상 사)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1대 이상 아) 반죽로라(DOUGH SHERTER) 1대 자) 냉장고(1,000L) 1대 이상 차)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3) 조주, 소믈리에 가) 진열대 4대 이상 나) 조주대 4대 이상 다) 양주병 : 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4) 바리스타 가) 커피머신 1대 이상 나) 커피그라인더 1대 이상 다) 로스터(로스팅머신)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6. <u>애견미용</u>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2) 욕조 2대 이상 3) 드라이어 10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개정안

[별표 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5조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23. 식음료품 (<u>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u> 등)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 가) 조리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4인당 1대 이상 나) 냉장고(1,000L이상) 1대 이상 다) 오븐기 1대 이상 라)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마) 제독시설 2) 제과·제빵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다)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라) 실습대 8대 이상 마)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바) 저울(5Kg 이상) 10대 이상 사)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1대 이상 아) 반죽로라(DOUGH SHERTER) 1대 자) 냉장고(1,000L) 1대 이상 차)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3) 조주, 소믈리에 가) 진열대 4대 이상 나) 조주대 4대 이상 다) 양주병 : 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4) 바리스타 가) 커피머신 1대 이상 나) 커피그라인더 1대 이상 다) 로스터(로스팅머신)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6. <u>애견 미용·훈련</u>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u>애견 미용</u> 가)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나) 욕조 2대 이상 다) 드라이어 10대 이상 2) <u>애견 훈련</u> <u>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u>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별표 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5조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41. 전자상거래, 컴퓨터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개 정 안

[별표 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5조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41. 전자상거래, 컴퓨터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u>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u>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